

#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## 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의거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 (129세대)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  - 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  - ※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- 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(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.)
  - ※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0조제3항)
  - ※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.
  - 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합니다.

### - 당첨자 선정방법

- ※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, 잔여세대 발생 시 강릉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"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"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또한,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
  -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,
  -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.
- ※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"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. (단,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)
- ※ 상기 내용 외 다른 사항은 국토교통부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릅니다.
-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 -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(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[별표1])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-	-	-
미성년 자녀수 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- 자녀 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- 영유아 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 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-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 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-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 3 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무주택 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- 배우자의 직계존속 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 자이어야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- 청약자가 성년 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- 공급신청자가 성년자 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 (강릉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저축 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- 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.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- 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합니다.
-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.
-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합니다.
  - ※ 동점자 처리 :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,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**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**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추가 (해당자)			
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, 인터넷청약 (청약홈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○	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 (신청자용)
○		인감증명서	본인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대리인 불가) ※본인 발급용
○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
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요망
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(가입)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(가입)확인서 발급 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 [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] - 인터넷청약 (청약홈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○		출입국사실 증명원	본인	-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-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
	○		피부양 직계존속	-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피부양 직계비속	-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30 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30 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
○		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(청약홈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- 3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
	○		자녀	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만 19 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자녀	- 만 18 세 이상 ~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
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-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이외 불가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입양의 경우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7.23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,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(오타)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견본주택 대표번호 : 1600-1698